

제 호				
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				
인적사항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번호 :)		
관련사항	대상구분		5·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	의
	보훈번호		학교소재지 관할 보훈(지)청	
제출처(학교명)			용도	(입학금, 수업료) 면제용
이미 면제받은 수혜 내역		입학금([]받음, []안받음) 학기 수() 또는 학점()		
위 사람은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 등의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. 다만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 등의 장이 5·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않습니다. 년 월 일 지 방 보 훈 청 장 보 훈 지 청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				
이 증명서는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.				
※ 위 학생에게 퇴학·정학·휴학·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를 관할 보훈(지)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				
우편번호 - / 주소 / 전화 () - / 전송 () -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(전자우편)				